

# 윤리강령

(Code of Ethics)

기업명	(주)유니온플레이스
문서번호	Union-S-2024-00002
제·개정일	2024-04-01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담당자	최은실 차장



유니온플레이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와 사회책임 경영을 추구하고,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강령은 유니온플레이스(이하 회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을 정하고, 윤리경영 실천 의식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윤리적인 경영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강령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 등에 소속된 임직원 및 파견사원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제3조(용어정의)

본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금품’이란 현금, 유가증권, 물품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 ② ‘향응·접대’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혜택을 의미한다.
- ③ ‘편의’란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숙박 및 교통편 제공, 관광안내, 행사 지원, 채무면제, 이권부여 등을 의미한다.
-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란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비례성 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⑤ ‘이해관계자’란 회사 및 임직원 등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관하여 법률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
- ⑥ ‘협력회사’란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 제4조(적용)

본 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강령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 제5조(고객 존중)

고객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이해하며,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매사 최선을 다한다.

#### 제6조(고객 만족)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만과 건의사항은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고 처리한다.

#### 제7조(고객 신뢰)

고객에게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또한, 직무로 인해 취득한 정보의 비공개 및 기밀성 보호를 위해, 고객 및 기타 당사자가 요청하는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전에 약속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8조(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모든 임직원은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항에 정의된 규범을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 ②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 ③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④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10조(내부정보이용 금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작성 및 관리)**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회사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①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를 조작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해당 문서를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 ③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⑤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배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⑥ 고객 및 협력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① 아래 각 호와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음담패설 또는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2. 직장에서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는 행위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② 아래 각 호와 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임직원 등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되어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적정범위를 넘어 임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제13조(정치관여 금지)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14조(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협력회사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업무상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전이나 선물, 향응, 접대,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않는다. 또한,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부조를 요구하는 등 직원 및 협력회사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 제15조(자기계발)

회사는 임직원 등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16조(상호 존중)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① 학력이나 성별, 종교, 연령,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②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③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④ 상호간 금전거래나 공동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

### 제17조(노사관계 정립)

회사와 임직원은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 제4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제18조(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제19조(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수립하고, 상호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공정한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 ② 모든 협력회사에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거래 조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③ 아래 각 호와 같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협력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임직원 개인을 위하여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4.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 임차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5. 협력회사 임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
  6. 협력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자행되는 비윤리적 행위
- ④ 협력회사를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지향한다.
- ⑤ 합법적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⑥ 회사의 윤리강령을 협력회사에 전파하여 협력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제5장 사회에 대한 책임

### 제20조(국내 및 해외법규 준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나 문화, 전통 등을 존중하여 진행하고, 거래 진행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수출규제나 경제제재 관련 법규, 협약 준수 여부 등은 미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1조(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제22조(환경보호)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이나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이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을 깊이 인식하고,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 제6장 윤리강령의 준수

### 제23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24조(위반사항 신고)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채널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 [www.unionplace.co.kr](http://www.unionplace.co.kr) > About > ESG 경영 > 신고센터
- 전 화 : 02-6959-8870 (경영지원팀)
- 팩 스 : 02-6959-8871 (경영지원팀)
- 이 메 일 : [union\\_esg@unionplace.co.kr](mailto:union_esg@unionplace.co.kr)
- 우 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302호, 1303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 제25조(위반사항 처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경영지원팀)는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진행 중 신고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응답해야 한다.

윤리강령 위반 행위자의 징계수위는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동일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리관련 교육에 대한 추가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제26조(제보자 신분보호)

윤리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 제보자나 피해자, 피해내용, 신고일자, 진행 결과 등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제보자에게 신고사실을 이유로 보복하는 자가 있을 경우, 사내규정이 정하는 내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정책은 2022.07.04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정책은 2023.06.14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정책은 2024.04.01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